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52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오세희 · 강경숙 · 임미애
박균택 · 민병덕 · 김기표
이주희 · 윤후덕 · 박해철
이광희 · 김 윤 · 민홍철
송재봉 · 권향엽 · 서영교
서삼석 · 이재강 · 최혁진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로서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최근 인구고령화와 해외국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특별법에는 국가 계약에 있어 도시형소공인 제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 도시형소공인이 국가

의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도시형소공인 수의계약 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해당 도시형소공인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도시형소공인으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소공인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7조의2(도시형소공인 수의계약 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해당 도시형소공인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도시형소공인으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u></p>